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소 방 청 장

I

시험개요

1 근거법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등

2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절차	장소공고	시험예정일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4. 12. 9.(월) ~ 12. 13.(금)				
1차 시험	필기시험	'25. 1. 8(수)	'25. 1. 18.(토)	'25. 2. 11.(화)
2차 시험	체력시험			'25. 2. 21.(금)
3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 신체검사서	'25. 2. 11.(화)	'25. 2. 19.(수) ※ 신체검사서 제출 12p 참고	'25. 3. 11.(화)
4차 시험	면접시험	'25. 2. 21.(금)	'25. 2. 26.(수) ~ 2. 27.(목) ※ 기간 중 하루	

※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http://119gosi.kr>)**을 통하여 변경 공고함

3 시험과목

구 분	선발예정인원 (총 30명)	필기시험(선택형)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인문사회계열	15명 (남성 13, 여성 2)	헌법, 행정법 한국사, 영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15명 (남성 13, 여성 2)	헌법, 자연과학개론, 한국사, 영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II 응시자격 및 가점 적용

1 자격 기준일

분야	기준일
응시 결격사유 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5. 2. 27.(목)
운전면허 ²⁾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³⁾	
응시연령	
필기시험 대체 성적	한국사 '25. 1. 17.까지 취득한 성적표
	영어 ⁴⁾ (성적 사전등록자) '21. 1. 1. ~ '25. 1. 17. (성적 사전미등록자) '23. 1. 18. ~ '25. 1. 17.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25. 1. 17.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해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3)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한국사, 영어 포함)

3), 4) 필기시험 대체 과목(영어) 및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인정기간과 관련, 소방청 공고 제2024-164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참고, 가점에 대한 세부 기준은 119gosi 별도 공고('24.11.27.)

※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25.3월 ~ '26.3월)을 마친 사람만 채용후보자로 등록

2 응시결격 및 복수국적 임용

가. (응시결격) 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 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4)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나. (복수국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에 제출(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 2)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3 신체조건

가.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나.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

- ▶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 ▶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함

4 응시연령

연령	생년월일
21세 이상 40세 이하	1984. 1. 1. ~ 2004. 12. 31.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 나이	1세	2세	3세

5 운전면허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자동 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소지

나. 보유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이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

6 가점적용

가. 대상자 및 비율 ※ 가점 관련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최신법령 적용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²⁾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³⁾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나. 가점 적용

- 1)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2)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 3) ‘자격 등 소지자’의 자료 제출기한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25. 2. 27.)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1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4. 12. 9.(월) 10:00 ~ 12. 13.(금) 18:00

나. 접수방법: 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2) 원서접수 기간(마감일 18시)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함
※ 119고시 접수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3)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4)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 단계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 완료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 (우 30128)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기준: 반명함(3cm×4cm), 사진 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 이상)
 - 사진등록: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및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제목 등) 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면접 시 블라인드 테스트로 前 직장 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거짓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채용시험 단계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 교체 불가
- ※ 원서접수 시 119고시에 등록한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함

2 응시수수료

가. 응시수수료: 7,000원

나. 수수료 환불: 필기시험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추가 비용 발생

다.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원서접수 시 실시간 확인 가능

3 서류접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방법
①	주민등록표 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24. 12. 9. ~ 12. 13.)	119고시
②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서접수 기간 ('24. 12. 9. ~ 12. 13.) 추가접수 기간 ('25. 1. 13. ~ 1. 17.)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④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체력시험 합격자	
⑥	운전면허증			
⑦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참고			

비고
 가. 서류접수 시(119고시) 실시간 검증(①,⑥)과 서류 사본 첨부제출(③,④,⑤)로 구분
 ※ ②, ⑦은 시험종류에 따라 실시간 검증 및 사본 첨부제출로 구분되므로 서류접수 시 119고시 확인
 나. 모든 접수기간 **시작시간은 10:00이며 마감 시간은 마지막 날 18:00까지임**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25. 1. 17.)까지 사전등록 후 추가접수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초본 및 운전면허증은 서류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하여 확인

4 원서접수 결과

구분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접수증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원서접수 기간 ○ 내용: 접수증 출력 후 접수번호, 성명, 응시계열, 선택과목 등 확인 ※ 접수증은 원서접수가 정상 등록여부 확인용이며, 응시표가 아님
원서접수 결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 12. 20.(금) 16:00 ○ 내용: 응시계열 및 남·여 응시자 현황 ○ 방법: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 게시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TOSEL
	PBT	IBT					
기준점수	490 이상	58 이상	625 이상	280 이상	50 이상 (level 2)	520 이상	550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사전등록자) '21. 1. 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필기시험 대체 과목(영어) 인정기간과 관련, 소방청 공고 제2024-164호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 참고
- 2) (사전미등록자) '23. 1. 18.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토셀(TOSEL),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에 한하며,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4)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119고시에 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5. 1. 13.(월) 10:00 ~ 1. 17.(금) 18:00]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합니다.
- 2)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접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함. (여권 사본 첨부)
- 3)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플렉스(FLEX)는 국가 공인을 받은 「듣기 및 읽기」 평가만 해당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합니다.
- 2)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5. 1. 17.)까지 기준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2)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5. 1. 13.(월) 10:00 ~ 1. 17.(금) 18:00]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합니다.

7 한국사 · 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25. 1. 17. 18:00)까지 기준점수(등급)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나.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는 필기시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할 때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시험절차

1 1차 시험: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2025. 1. 18.(토) 10:00 ~ 11:40 (10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01)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장소공고: 2025. 1. 8.(수)

- 1) 응시표 출력: 장소공고일 (119고시→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다. 시험점수: 과목당 100점 만점, 100문항(과목당 25문항)

라. 시험과목: 4과목(필수 2, 선택 2) ※ 한국사,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채용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인문사회계열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1-1 출제문제 공개 및 문제 이의제기

가. 답안공개: 2025. 1. 18.(토) 14:00 / 119고시

나. 이의제기: 2025. 1. 18.(토) 14:00 ~ 1. 19.(일) 18:00

※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1) 방법: 119고시에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

※ 로그인 → 문제/정답 이의제기

2) 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1-2 필기시험 점수 공개 및 이의제기

가. 점수공개 일자: 2025. 2. 5.(수) 14:00 / 119고시

나. 이의제기 기한: 2025. 2. 5.(수) 14:00 ~ 24:00

※ 119고시 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서식에 따라 작성 후 119고시 등록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이의제기

점수 문의 서식	1. 응시번호 2. 응시자 성명 3. 사전 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가점 00) 4. 본인 채점점수(A과목 85, B과목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가점 00)
-------------	--

라. 이의제기 답변: 2025. 2. 7.(금)까지

1-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합격자 공고

1) 공고일시: 2025. 2. 11.(화) 14:00

2)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3) 공고내용: 필기시험 합격자

나. 합격자 결정: 총 64명(계열별 선발예정인원의 남자 2배수, 여자 3배수)

1)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남성(2배수)		여성(3배수)		남성(2배수)		여성(3배수)	
	선발인원	필기합격	선발인원	필기합격	선발인원	필기합격	선발인원	필기합격
인원	13	26	2	6	13	26	2	6

2)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2

2차 시험: 체력시험

가. 시험일시: 2025. 2. 19.(수)

09:00 ~ 12:10	신체검사제출/ 종합적성검사
13:10 ~ 18:00	체력시험

나. 장소공고: 2025. 2. 11.(화) 14:00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다. 대 상 자: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평가배점: 총점 60점(종목별 10점 만점)

바.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5 적용

2-1

도핑테스트

가. 채취일시: 2025. 2. 19.(수) → 체력시험 종료 후

나. 채취대상: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2~5%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다. 채취시료: 소변 90ml 이상

라. 시료검사: 시료 소변에 대한 요비중 검사(시료 봉인)

마. 동의서 징구: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행위자 조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합격을 취소함

2-2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025. 2. 21.(금) 17:00

나.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다. 합격기준: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발급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시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체검사 받기를 권고함

가. 제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다.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라. 제출방법: **종합적성검사 당일 제출**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5.2.27.)** 까지 등기우편 제출

- ▶ 세종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우 30128)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함(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마.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25.2.27.)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 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보류’에 대한 **별도의 재검사 기간을 두지 않으므로** 수검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 합격발표: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 약물검사(TBPE)는 3~4일 소요되며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 ‘색각’ 이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색각경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은 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함
- ▶ 병원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후 검사서 발급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을 것

4 3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가. 시험일시: 2025. 2. 19.(수)

09:00 ~ 12:10	신체검사제출/종합적성검사
13:10 ~ 18:00	체력시험

나. 장소공고: 2025. 2. 11.(화) 14:00

다.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체력시험 전 오프라인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5 4차 시험: 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2025. 2. 26.(수) ~ 2. 27.(목) / 기간 중 하루

나. 장소공고: 2025. 2. 21.(금) 14:00

다. 시험대상: 종합적성검사 응시자 중 체력시험 합격자

라. 시험방법: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마.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6 최종합격자 결정

6-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025. 3. 11.(화) 14:00

나. 공고방법: 119고시 · 소방청 누리집 게시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필기시험 50% + 체력시험 25% + 면접시험 25%에 가점을 반영한 성적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라. 합격증명서 발급

- 1) 발급일자: '25. 3. 12.(수) ~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 종료 시까지(1년)
- 2) 발급방법: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출력)

6-2 최종합격자 교육

가. 교육장소: 중앙소방학교

나. 교육기간: '25. 3월 ~ '26. 3월(1년)

※ 신임교육과정 미입교 시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와 함께 제시)
- ▶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신분증 사진 등
 - ※ 신분증은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모바일 신분증은 필기시험에는 불가하나 체력·면접시험에는 가능

나. 응시자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예시)

-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2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 ※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불합격 처리)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에 거짓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

라.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파일 등록)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사.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의 가점은 만점의 5%, 3%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10%, 5%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점의 거짓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바.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훼손한 경우
-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사.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례

- ▶ 부정행위자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적용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문제지 배부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에는 채점에 오류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카.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4 체력시험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 시험일자 및 시험시간 변경 불가 /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응시 불가
-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라.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 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마.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바.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사.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는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

자.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체력시험 등록 시 영상 촬영 동의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 촬영 동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시험 종료 후 삭제합니다.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 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하. 체력시험 채점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력시험 채점표 유의사항 안내

- ▶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스캔) 결과에 따름
- ▶ 계산된 총점 등 기타 비교란에 불펜 등으로 기재된 숫자는 판독하지 않음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제7호에 의거, 채점표를 고의로 수정하는 등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응시자) 매 종목 득점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 응시자 확인란에 서명해야 함
- 응시자는 측정기록점수가 득점 마킹란에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 시험 종료이후 개인별 점수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거.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합니다.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가.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사.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 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6**서류제출**

- 가. 모든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거짓,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합니다.

7**종합적성검사**

- 가.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종합적성검사 관련 자료 일체는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사.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인·적성 결과는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생년월일 및 응시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시험종료 직후에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그 외의 사항은 필기시험에 준하여 시험절차를 진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면접시험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의 세부 운영 방법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라. 시험장 내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며 응시자 교육시간에 수거한 후부터 면접이 끝날 때 까지 소지할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바.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시험시간 중 외부 인과의 접촉은 금지되며, 시험 종료 후 대기 중인 응시자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아.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자. 면접복장은 격식을 차린 획일적인 옷차림은 권장하지 않으며,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평상복, 노타이)”을 권장합니다. 또한, 면접복장은 면접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차.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합니다.
- 다.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소방위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 라. 소방위로 임용된 후 1년간의 필수 보직기간에는 시도 소방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 및 119고시(www.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 -7286 ~ 7292
- ※ 원서접수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SE코리아, 070-4290-9611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